

[논단]

# 한국천주교회 고유전례력의 역사\*

■  
윤 종 식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신부]

서 론

제1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고유전례력에 관한 문헌들

-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개혁에 따른 전례주년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개혁에 따른 고유전례력 지침

제2장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의 역사

- 1.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수호성인
- 2. 침례표
- 3. 한국 성인들과 명절, 지역 상황에 따른 고유전례력

제3장 한국어본 『로마 미사 경본』(2017)에서의 고유전례력

- 1. 등급 조정된 고유전례력
- 2. 한국의 상황과 명절에 관련된 고유전례력
- 3. 수호성인과 새로운 복자 기념

결 론

## 서 론

### 인간의 시간에 하느님의 구원사건을 배치한 전례주년

하느님은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여 ‘뜻 깊은 시간’(kairos)을 만드  
 시고 역사적이며 ‘단 한번’(ephapax)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히브 9,28  
 참조)인 성자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다. 하느님  
 의 구원사업을 계속하고 현재화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는 한 해의  
 흐름 안에서 날들을 정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경건하게 기  
 념하고 경축하는 것을 자기임무라고 생각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  
 회에서는 중세를 거치면서 성모님과 성인들의 축일에 가려져서 그

\* 이 글은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  
 성된 논문임.

중요성이 약화되어있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근본 축일인 ‘주일’과 ‘파스카 대축일’을 중심으로 전례주년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일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수난과 함께 이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 이렇게 속량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를 신자들에게 열어, 신자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한다”(『전례현장』 102항).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사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가톨릭교회교리서』 1067항)하고 그것을 인간의 시간에 배치하여 모든 시기에 현존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전례주년’이라고 한다.

### **전례력에는 보편전례력과 고유전례력이 있다.**

교회는 전례주년의 전례 거행을 ‘전례력’에 정해 놓았다. 전례력에는 로마 전례를 따르는 전체 교회가 사용하는 ‘보편전례력’(Calendaria generale)과 어떤 지역 교회나 수도 공동체가 사용하는 ‘고유전례력’(Calendaria particularia)이 있다. 보편전례력에는 “전례 거행 전체 주기가 들어 있다. 곧 고유 시기에 지내는 구원 신비의 전례 거행,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모든 이가 의무적으로 지내야 하는 성인들의 전례 거행과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성덕을 보여 주는 다른 성인들의 전례 거행이 들어 있다. 그러나 ‘고유전례력’에는 지역 교회에서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전례 거행들으로써 보편 주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되어 있다. 각 개별 교회와 수도 가족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인들을 특별히 공경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49항). 지역교회와 수도회의 고유한 전례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관할 권

위(지역 주교, 지역 주교회의, 수도원 원장 등)가 작성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서 고유전례력에 배치해야 한다.

### 새 한국어 「로마 미사 경본」 출간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2017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부터 사용하게 된 한국어 「로마 미사 경본」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이 승인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는 「미사 경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라틴어인 *Missale Romanum*, 곧 ‘로마전례로 거행하는 미사’라는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를 추가했다. 1996년부터 전체 기도문이 들어가 있지 않고 미사 때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미사통상문’과 매달 필요한 전례문과 독서들을 담은 소책자를 본당에 배분하여 사용해왔다. 이제는 모든 전례시기와 각종 예식과 기원 미사의 기도문들이 다 포함된 「로마 미사 경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미사를 드리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사용하게 될 「미사독서」도 4권으로 출간으로 미사에서 사용되는 예식서의 품위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온 전례서들의 작업과 교황청 인준이다.

그렇다면 전에는 한국어로 된 온전한 「로마 미사 경본」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1974년에 교황청 인준을 받고 1976년부터 사용되던 한국어 미사 경본이 있었으나 한국 고유 예법과 어법에 알맞고 원문에 더욱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새롭게 번역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결실로 1996년 「미사통상문」이 나왔고, 21년이 지난 2017년에 새한국어 「로마 미사 경본」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로마 미사 경본」에는 교황청의 경신성사서에 권고<sup>1)</sup>에 따라 수정된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

1) 교황청 경신성사서에서 2015년 6월 24일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보내왔다. 경신성사서 장관인 로버트 사라 추기경의 서한과 76건의 수정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고유전례력과 관계된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전개를 한다.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개혁에 따른 전례주년에서 고유전례력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의 교회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한국천주교회는 나름대로의 역사의 흐름에서 고유전례력을 문화와 지역 상황에 적절하게 맞추어 형성하였다. 이에 대한 과정을 간략하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추인된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에 포함된 한국교회의 고유전례력을 살펴보고 수정된 내용들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전례주년의 실재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천주교회가 성장해오면서 고유전례력 측면에서 노력해온 과정을 확인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쇄신된 교회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찰하며, 2017년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에서 확정한 고유전례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 제1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고유전례력에 관한 문헌들

교황청 예부성(현재의 ‘경신성사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개혁에 따라 마련된 미사와 성무일도의 보편전례력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절 원칙들을 알맞게 적용하기 위한 미사와 성무일도의 고유전례력들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 이유는 새 보편전례력의 발간과 함께 전례주년은 두 주기(週期), 주님의 신비를 중심으로 하는 주기와 성인들의 주기를 보다 조화롭게 배치했으나 나라, 교구, 수도회마다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공경하는 성인들에 대한 거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주일과 파스카 신비를 중심으로 하는 전례개혁의 정신에 따라 지침들을 세워서 조절과 적응을 하도록 하였다.

##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개혁에 따른 전례주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전체를 재검토하면서 『전례헌장』에서 전례주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례주년을 재검토하여, 거룩한 시기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규율들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보존하거나 복구하고, 그리스도 구속의 신비, 주로 파스카 신비의 거행에서 신자들의 신심을 마땅히 배양하도록 전례 시기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전례헌장』 107항).

전례주년의 본질적인 중심인 그리스도 구속의 신비인 파스카 신비를 기준으로 하여 재검토하고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자들의 마음은 먼저, 주년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들을 경축하는 주님의 축일들을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유 시기가 성인들의 축일 위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여, 구원 신비의 완전한 주기가 마땅한 방법으로 기억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례헌장』 108항).

또한 전례주년의 두 주기, 곧 주님의 구원의 신비들을 경축하는 주기와 성인들의 축일들을 경축하는 주기 중에서 구원 신비의 주기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례헌장』의 내용은 이미 이전의 교황들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것들이다. 비오 10세와 요한 23세는 다음과 같이 정한 바 있다. “모든 이가 주일을 참으로 고유하게 ‘근원 축일’로 지내도록 주일의 품위를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순시기의 전례 거행을 개혁하였다.”<sup>2)</sup> 비오 12세도 서방 교회 안에서 부활성야 예절을 복구하도록 했으며, 이로써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복구하

2) 바오로 6세, 자의교서 ‘파스카 신비’ *Mysterii Paschalis*(1969.2.1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이하, 총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156쪽.

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와 맺은 영적 계약을 하느님의 백성이 갱신하도록 했다. 1969년 2월 14일 바오로 6세는 자의교서 “파스카 신비”(Mysterii Paschalis)를 반포하면서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과 새 로마 보편전례력”을 승인했다.<sup>3)</sup>

교황들의 전례주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한 해를 주기로 하여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에 더욱 열렬히 참여하려는”<sup>4)</sup>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례개혁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ㄱ) 주일은 ‘근원 축일’로,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이 날을 존중하도록 할 것이다(『전례현장』 106항).

ㄴ) 파스카 신비와 파스카 신비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의 거행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규범』 17~18항).

ㄷ) 성인 축일 수를 줄여 참으로 보편적인 성인들의 축일만 지낸다(『전례현장』 103~104항).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개혁에 따른 고유전례력 지침

공의회의 전례개혁의 원리에 따라 전례주년의 고유전례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돕는 지침들은 다음의 세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1969년 2월 14일에 발표된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규범’의 48~58항이다. 둘째로는 1970년 6월 24일에 좀 더 자세한 규범들을 제시하는 ‘고유전례력에 관한 훈령’(Calendaria particularia, 이하 「고유전례력」)이 발표되었다. 셋째로는 1997년 9월 20일에는 ‘고유전례력과 고유전례문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공지’를 통하여 오류와 남용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규범의 적용을 설명하고 있다.

3) A. Bergamini, “Anno liturgico” in *Liturgia*, D. Sartore / A. M. Triacca / C. Cibien(eds.), San Paolo, 2001, p.84.

4)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57쪽.

## 2.1.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규범」(1969)

이 규범은 기본적으로 전례력과 그 구체적인 축일표에 관한 사항들이라 고유전례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기보다는 기본 원리를 말해준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고유전례력을 작성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는 50항은 중요하다.

ㄱ) 전례주년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밝히고 기념하는 전례 시기나 주기, 대축일, 축일은 온전하게 보존하고 마땅히 고유 거행들보다 앞세워야 한다.

ㄴ) 고유전례 거행들은 저마다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에 제시된 각 등급과 순위를 지키며 보편 전례 거행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해야 한다. 그러나 고유전례력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 성인의 축제는 전례주년 안에서 한 번만 지내야 한다. 그러나 사목적 이유가 있으며 개별 교회 또는 수도 가족의 수호성인이나 창설자의 유래를 옮긴 날이나 발견한 날에 선택 기념으로 다른 축제를 지낼 수 있다.

ㄷ) 특전을 받아 전례력에 넣을 전례 거행들은 구원 신비의 주기 안에 이미 들어 있는 다른 전례 거행과 겹치지 않고 그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sup>5)</sup>

『전례헌장』의 개혁 원리인 구원의 신비를 중심으로 고유전례력을 작성해야 하며, 새로 개정된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에 제시된 각 등급과 순위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성인의 축제 과다로 인해서 고유전례력이 과중한 부담을 지낼 수 있음을 우려하여 각 성인은 일 년에 한 번만 지내야 함도 강조했다. 특전을 받은 경축일은 이미 전례주년에 있는 축일들과 겹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특전과 축일과 그 팔일 축제가 많아지고, 차츰 전례주년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끼어들

5)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72-173쪽.

게 되었다는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결과로 신자들은 적지 않은 특별 신심 행사에 젖어 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구원 신비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sup>6)</sup>

## 2.2. 「고유전례력」(1970)에 관한 훈령<sup>7)</sup>

이 훈령의 목적은 미사와 성무일도의 총지침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적용 원칙들을 적용하여 미사와 성무일도의 고유전례력과 보편전례력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지역교회와 수도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상황에 맞는 고유전례력을 준비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주기 위한 훈령으로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고유전례력 전반에 대해서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규범」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2장은 ‘고유전례력과 전례거행’이라는 주제로 지방 또는 국가 또는 더 넓은 지역의 고유 전례 거행들과 수도 공동체가 드러야 하는 특별한 전례거행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 전례력에 꼭 넣어야 하는 고유전례력과 전례 거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3장은 ‘고유전례력에서의 몇몇 전례 거행들’이라는 제목으로 수호성인자와 명칭, 더 이상 의무축일이 아닌 대축일에 대한 조정 그리고 특별 간구와 사계대제(四季大齋)의 날에 상응하는 전례 거행에 관한 지침을 말하고 있다. 제4장은 그에 따른 ‘미사와 성무일도 전례문의 정비’를 미사와 성무일도 고유기도문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새로운 전례 규범과 대립되는 그전의 특권과 특전은 폐지됨을 천명하고 고유전례력과 고유 기도문을 교황청 경신성사성으로 보내어 인준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 참조: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55쪽.

7) Sacra Congregatio pro Cultu divino, *Instructio Calendario particularia de calendariis particularibus atque Officiorum et Missarum propriis recognoscendis*(1970.6.24.), *AAS* 62(1970), 651-663; *Notitiae* 6(1970), 349-370.

이 문헌의 목적은 지역교회와 수도회 가족들이 각각의 고유전례력을 만들어 교황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인 만큼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 2.3. 「고유전례력과 고유전례문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공지」(1997)<sup>8)</sup>

1997년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발표된 이 공지는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앞선 지침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다. 이 공지가 발표된 배경은 3항에서 밝히고 있다.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을 이야기한다.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이 탄생한 복자와 성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유전례력에 도입된 새로운 기념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전례력 안에 상당수의 기념일들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축일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평일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경신성사성이 전례력의 현저한 변화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규정들을 강조하고자 공지를 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13개 부분이며 49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1~4항)에서는 『전례현장』과 앞선 규정들의 기본 원리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고유전례력을 각 지역교회와 수도회 가족이 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강조해야 할 규정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1부(5~9항)는 고유전례력에 기념일을 추가할 경우에 필요한 규정들을 설명한다. 제2부(10~15항)에서는 보편전례력의 온전성을 강조하면서 고유전례력과 상충할 경우의 기준을 언급한다. 제3부(16~17항)의 전례 법규는 일부 대축일의 경축 이동 가능성을 예견하였기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말하며, 예로써 성 요셉 대축일이

8) Congregazione per il Culto divino e la Disciplina dei Sacramenti, Notificazione *Il Concilio Vaticano II* su alcuni aspetti dei calendari e dei testi liturgici propri(1997.9.20.): *Notitiae* 33 (1997), 284-297; *EV* 16(1997), 1071-1083.

의무 축일이 아니고 사순 시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동할 수 있다고 이해를 돕고 있다. 제4부(18~24항)에서는 고유전례력의 등급 조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부(25~27항)는 지나치게 많은 기념일들이 도입되는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성인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동 기념일로 지낼 수 있으며 어떤 성인과 복자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기념하도록 유도하는 보조성의 원리 적용을 말한다. 제6부(28~32항)는 새로운 복자나 새로 시성된 성인을 추가할 때의 신중함을 언급하며 복자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기념일로 지낼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시켜준다. 제7부(33항)는 연중과 대림, 그리고 성탄과 부활 시기 평일에 선택 기념일일 때 평일 미사나 로마 순교록에 있는 한 성인의 미사를 거행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제8부(34~37항)는 고유전례력에 성인과 복자를 추가하려면 그 지역이나 수도회와의 연관성과 신학적 성찰, 그리고 신자들의 사목적 유익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제9부(38~44항)에서는 고유전례력에 수록된 성인과 복자의 기념일을 위한 고유전례력에 관한 규정들이다. 성무일도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로서 성인의 약전, 독서기도 제2독서로 사용될 수 있는 글에 대해서 기준을 말해준다. 제10부(45항)는 전례기도문에서 본기도는 성인 약전의 내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투적 문구를 피하면서 미사경본의 다른 성인 고유 기도문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제11부(46~48항)에서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고유전례력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각계 각층의 적절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성좌에 상세한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제12부(49항)는 전례문 작성에 관련하여 훈령 「세계 공의회」 29항의 규정을 따라서 주교회의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에 전례력과 전례문을 주교회의의 장과 총무가 서명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고유전례력에 관한 규정들은 실제로 한국어본 『로마 미사 경본』에 그대로 적용하여 몇 차례 경신성사성과 의견교환을 이

루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 제2장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의 역사

기본적으로 고유전례력이 생기려면 그 지역 교회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곧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함께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황청에서 발표한 문서에서 한국 지역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659년이다. 로마 교황청은 1659년 중국에 남경 대목구를 설정할 때 그 관할 구역에 ‘高麗’란 지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톨릭교회의 공식 관할 구역으로 한국이 언급되었다. 교황청의 이러한 결정은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포교성성이 조선 선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권장하는 뜻에서 내려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sup>9)</sup>

### 1.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수호성인

#### 1.1. 조선대목구의 설정

1690년 북경교구의 설정과 함께 초대 북경교구장으로 임명된 키에사 주교는 북경교구가 남경교구보다 거리상 조선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지역에 대한 재치권(Jurisdictio)을 교황청에 요청하였고, 1702년에 교황청은 조선에 대한 재치권을 북경 주교에게 허락하였다.<sup>10)</sup> 그러나 북경 주교에게 넘어간 조선에 대한 관할권은 1721년 북경 주교의 사망과 함께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으며, 조선에 대한 중국 주재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노력도 ‘의례 논쟁’으로 인한 박해 등 중국 교회의 불안 요인으로 중단되었다.<sup>11)</sup>

9) 참조: 이영춘, 「중국에서의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문제 및 조선대목구 설정에 관한 연구」,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173쪽.

10) A. Choi, *L'Erection du premier Vicariat Apostolique et les origines du Catholicisme en Corée, Suisse*, 1961, p.14; 참조: 최석우, 「한국교회와 로마 교황청」, 『교회와 역사』 106(1984), 한국교회사연구소, 4-11쪽.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한문 서학서’를 통해 ‘西學’을 접하고 연구 하던 남인 학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천주 신앙’을 수용하기를 원 하던 이벽의 권유에 따라 북경에 도착한 이승훈은 북당을 방문하 였고, 그곳에서 북경 궁정 數學者이자 통역관인 그랑몽 신부를 만 나 교리를 배우고 1784년 1월 말, 베드로란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 다. 이승훈은 귀국 후에 이벽을 세례자 요한으로 세례를 주면서 자 신의 집과 주변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천주교의 선교 활동을 했 다.<sup>12)</sup>

이승훈과 그 동료들은 몇몇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질문하기 위해 서 북경 교회와 연락을 취하기를 원했고 이번엔 윤유일이 동지사 행의 마부 자리를 얻어 북경에 도착했다. 1790년 1월 30일 북당의 그랑몽 신부를 찾아갔지만, 1773년에 예수회가 해산되어 그랑몽 신 부는 廣東으로 떠나서 없었다. 대신 예수회를 교체해서 파견된 새 선교단 단장인 라자로회의 로신부를 만나게 되었다. 로 신부는 2월 9일에 윤유일에게 조건부 세례를 주고 윤유일 일행의 도착에 대해 북경교구장 구베아 주교에게 보고하였다. 구베아 주교는 조선 신자 들의 질문에 답하는 사목 서한을 써 주었다.<sup>13)</sup>

구베아 주교는 포교성성에 보고서를 보내어 조선에 대한 관할권 을 자신에게 맡겨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황 비오 6세 (1775~1799년)는 1792년에 조선의 신자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구베 아 주교 개인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북경교구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베아 주교의 개인적 보호와 지도에 맡기는 것임을 분명 히 하였다.<sup>14)</sup> 그래서 구베아 주교(Alexander Gouvea, 1751~1808)는 외 모나 분위기가 조선 사람과 매우 닮은 주문모 신부를 보냈으며, 1794년 12월에 입국한 주문모 신부는 1801년 5월 31일 새남터에서 순교 할 때까지 6년 사목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조선교회의 신자 수가 1만 명에 달했다.<sup>15)</sup> 이후 조선 교회를 맡고 있는 북경 교

11) *Ibid.*, pp.14~15.

12) 참조: 이영춘, 앞의 글, 175~176쪽.

13) 참조: 같은 글, 178쪽.

14) A. Choi, *op.cit.*, p.48.

회의 비참한 처지와 포르투갈의 선교 보호권 주장으로 인해 교황청의 포교성성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신부를 보내 달라고 교황께 간청하는 조선 신자들의 서한이 1827년 로마에 도착하였다. 조선 선교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던 포교성성장관 카펠라리 추기경이 1831년에 교황으로 당선하여 그레고리오 16세(1831~1846년)가 되었다.<sup>16)</sup>

드디어 1831년 7월에 조선 포교지 관할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결<sup>17)</sup>을 하였고, 이 의결에 따라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두 개의 칙서를 반포<sup>18)</sup>하여 조선에 대목구를 창설하고, 초대 대목구장으로 브뤼기에르 주교(B. Bruguière, 1792~1835)를 임명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1835년 10월 20일 갑자기 병을 얻어 4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sup>19)</sup>

그리고 제2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앙베르 주교(L. M. J. Imbert, 1796~1839)는 사천교구장 시니트 명의의 폰타나 주교에 의해 1837년 5월 14일 갑사(Capsa)의 명의 주교로 성성되었다.<sup>20)</sup>

15) 참조: 샤를르 달레 저, 안응렬, 최석우 역, 『韓國天主敎會史』上,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377~378, 483쪽.

16) 참조: 이영춘, 앞의 글, 190쪽.

17) 포교성성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뤼기에르 주교의 조선 파견을 지지하며, 그의 지원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교의 조선 입국에 앞서 먼저 중국인 유 파치피코 신부를 입국시켜서 그로 하여금 주교의 입국을 준비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조선대목구를 북경에서 독립된 교구로 설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북경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에 입국한 이후'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셋째, '새로 설정되는 조선대목구를 파리 외방전교회에 위임할 것인가, 또는 포교성성이 직접 관할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브뤼기에르 주교가 입국하고, 또 그 체류가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한다. 참조: 이영춘, 앞의 글, 190~191쪽.

18)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2개의 칙서는 다음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샤를르 달레, 안응렬, 최석우 역, 『韓國天主敎會史』中,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234~235쪽.

19) 참조: 같은 책, 323~324쪽.

20) 이영춘, 앞의 글, 204쪽.

## 1.2. 수호성인의 선정

주교 성성식을 마친 앵베르 주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3개월 정도를 더 머무른 뒤 1837년 8월 17일 사천교구를 떠나 조선 입국 길에 올랐다. 1837년 12월 17일 변분에 도착한 앵베르 주교는 이튿날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고, 13일 후에는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 교회는 조선대목구 설정 6년 만에 대목구장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앵베르 주교가 조선 입국에 성공함에 따라 조선대목구의 북경 보호권 교구로부터의 독립과 파리 외방전교회에 대한 조선대목구 관할도 결정적이고 확고하게 되었다.<sup>21)</sup>

조선 입국에 성공한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1일자로 포교성성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그 동안의 교우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파악한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선 선교지가 북경 교구에 예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북경교구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을 조선대목구의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나, 이제 ‘성모무염시잉모태’(聖母無染始孕母胎)를 조선대목구의 새로운 수호성인으로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이러한 앵베르 주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1841년 8월 22일자 교서를 통하여 그동안 조선 교회가 수호성인으로 삼았던 성 요셉과 함께 ‘성모무염시잉모태’<sup>22)</sup>를 조선대목구의 수호성인으로 함께 지낼 것을 운허하였다.<sup>23)</sup> 이때부터 성모 공경 활동이 보편화되었고, ‘성

21) 참조: 같은 글, 204-205쪽.

22) 앵베르 주교의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아무래도 ‘파리의 무염성모 성심회’(Confraternitas Ssmi et Immaculati Cordis Mariae pro conversione peccatorum)라는 성모무염시대 신심 운동 단체의 영향이라 추측된다. 이 단체는 1836년 12월 16일 프랑스 파리 ‘승리의 대성당’(Ecclesia vulgo dictae N. D. des victories Parisiis)의 주임 신부 테쥬넛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약칭 ‘성모성심회’ 또는 넓게는 ‘성모회’로 알려져 있다. 이 회의 목적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티없이 깨끗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마음’(Cor Ssmum et Immaculatum B.M.V.)을 더욱 성심껏 공경하고, 그녀의 전구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죄인들의 회개를 청하는 것이다. 이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마리아 신학 연구』,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3, 800쪽.

23) 참조: 같은 책, 798쪽; 이영춘, 앞의 글, 205쪽.

모성심회'가 1846년 11월 2일 충청도 공주 땅 수리치골에서 처음 설립되었다.<sup>24)</sup> 그리고 제8대 조선대목구 주교인 뮈텔 주교(Mutel. Gustave Charles Marie, 1854~1933)는 이러한 조선교회의 성모공경의 좋은 신심을 보다 확고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1876년 7월 2일 루르드에 성당이 건립되어 축성될 때에 제6대 조선대목구장 리텔 주교(1830~1884 재임)가 이 성당 중앙 왼쪽 벽에 한글과 라틴어로 석판에 글자를 새겨 조선의 선교사들이 무사히 항해를 하여 도착한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입국 후 2년이 되는 해에 조선대목구 주교좌 성당이며 두 번째 고딕식 성당인 서울 중현(명동) 성당을 1892년 5월 8일에 정초식을 하고 1898년 5월 29일에 조선교회의 수호성인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수호성인으로 하여 축성식을 하였다.<sup>25)</sup> 앵베르 주교의 원의로 시작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한국천주교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그에 따른 신심은 그 후대의 주교, 특히 리텔과 뮈텔 주교에 의해서 더욱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 2. 침례표

### 2.1. 침례표는 무엇인가?

조선천주교회에서는 지금은 전례력이라는 하는 침례표(瞻禮表)를 만들어 교회의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념하는 축일들을 지냈다.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을축년(1865년)과 병인년(1866년)의 침례표다.<sup>27)</sup> 지금으로 보면 아주 간략한 전례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상 침례표와 관련해서 가장 빠른 것은 1791년 권일신의 집에서 나온 '신해침례'(辛亥瞻禮)라는 책이다.<sup>28)</sup> 이것은 신해박해 당시 형

24) 참조: 같은 책, 799쪽.

25) 참조: 같은 책, 814~815쪽.

26) 참조: 윤종식, 『꼭 알아야 할 새 미사통상문 안내서』, 가톨릭출판사, 2017, 25~27쪽.

27) 방상근, 「'침례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敎會史研究』 42(2013), 한국교회사연구소, 57쪽.

리(刑吏)들이 양근의 권일신 집에서 압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의 신자들이 1791년 이전부터 침례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침례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침례표에 따라 주일과 축일에 미사를 거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1786년부터 시작된 평신도 성직제(가성직제)<sup>30)</sup>를 통한 성사 집전이다.<sup>31)</sup>

## 2.2. 침례표는 언제부터 만들어 사용했는가?

그렇다면 1794년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전까지 침례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했을까? 교회사 학자인 방상근은 복음서의 주해서인 『성경직해』와 당시의 기도서인 『수진일과』에 주목을 한다. 먼저 1790년경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직해』는 1년 동안의 주일과 침례를 소개하고, 각 주일과 침례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과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책이다. 곧 “장림(대림)시기 → 예수 성탄 → 삼왕내조(공현) → 봉재(사순)시기 → 예수 부활 → 예수 승천 → 성신 강림 시기”와 관련된 주일과 침례, 그리고 성모와 성인들의 침례에 대한 성경 말씀과 해설이 있다.<sup>32)</sup>

28)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11월 21일; 조현범, 「19세기 조선 천주교회와 시간」, 『청계논총』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9, 187쪽.

29) 방상근, 앞의 글, 59쪽.

30) 이만재 편, 김시준 역주, 『천주교 전교 박해사(백위편)』, 국제교전교육협회, 1984, 95-96쪽.

31) 참조: 「이승훈이 1789년 말에 북당의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 『만남과 믿음의 길목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11~14쪽. 이승훈이 1784년 1월에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를 세워서 신자들을 위해 고해성사를 비롯하여 미사와 견진성사 등을 집전하였다. 그러나 신부 역할의 한 사람으로 임명된 유향검이 평신도에 의한 이와 같은 성사 집전은 불법이며 독성행위(瀆聖行爲)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즉시 성사 집전을 중단하고 선교사들의 지시를 구하도록 촉구하였다.

32) 방상근, 앞의 글, 61쪽. 최석우 몬시뇰은 『성경직해』가 일찍 번역된 것은 필연코 주일과 축일에 사용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참조. 최석우, 「사학징의를 통해서 본 초기천주교회」, 『교회사연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24쪽.

『성경직해』를 통하여 신자들이 전례력의 흐름과 기념해야 하는 주일과 축일들을 알고 있었다면, 주일과 축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수진일과』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책에 매년 첨례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영첨례표」(永瞻禮表)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3)</sup> 조선천주교회 신자공동체는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도 전에 『성경직해』와 『수진일과』에 수록된 첨례표의 작성 원리와 그리고 당시 나라에서 사용하던 역서인 24절기가 표시된 시헌력(時憲曆)<sup>34)</sup>의 보급으로 춘분을 계산하여 부활첨례날을 알아내고 이것을 기준으로 첨례표를 만들었고 이에 의거하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한국천주교회는 1966년까지 ‘첨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67년부터 ‘축일표’로 바뀌어 표기하였다.

### 2.3. 첨례표에 나오는 조선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

1866년 첨례표에 의하면 조선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과 연결된 축일들로는 ‘성 요셉(성모) 동국대수호성인’(2.3), ‘성 방지거 사베리오 동국대수호성인’(10.27), ‘성모시잉모태(동 성 요셉) 동국대수호성인’(11.2)이 있다.<sup>36)</sup> 이것은 당시 조선 교회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신자들에게 기억시키고, 두 수호성인의 도움으로 조선 교회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33) 참조: 방상근, 앞의 글, 61-65쪽. 이 논문에서 방상근은 「영첨례표」의 내용에 대해서 9가지의 이동 축일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기준은 부활첨례날을 정할 때 춘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례력에서 이동 축일을 정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34) 시헌력은 조선시대 1653년(효종 4)부터 1910년까지 사용하던 역서다. 시헌력에는 24절기가 표시되어 있고, 각 날짜는 숫자·간지(干支)·납음오행(納音五行)·28수(宿)·12직(直) 등 5종류의 시간 주기로 표시되어 있다. 참조할 수 있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이창익, 「시헌력 역주에 나타난 시간 선택의 의미」, 『종교문화비평』 창간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266-271쪽; 조현범, 「한말태양력과 요일주기의 도입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7(1999/봄), 한국종교연구소, 235-254쪽.

35) 참조: 방상근, 앞의 글, 65쪽.

36) 참조: 방상근, 앞의 글, 76-78쪽.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은 1748년에 ‘희망봉에서부터 인도, 중국,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사베리오 성인을 전교의 수호성인으로 삼은 동국은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여러 나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7)</sup>

1929년 칙례표에 새로운 대축일이 추가되었는데, 10월 3일에 ‘성녀 영혼·예수데레사 전교디방대주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교황청 예부성이 비오 11세의 뜻에 따라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를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고, 전례력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sup>38)</sup>

### 3. 한국 성인들과 명절, 지역 상황에 따른 고유전례력

한국 성인들은 박해에 따른 순교자들이다.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박해 중에 만여 명이 순교하였지만,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대박해 때 순교한 이들 중에서 1925년에 79위, 1968년에 24위가 시복되었다. 103위 복자가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성인 반열에 오르면서 보편전례력에 들어가는 한국 성인 축일이 생겼다. 103위 성인은 1925년 7월 5일에 79위, 1968년 10월 6일 24위로 시복되신 분들이다.<sup>39)</sup> 여기서는 ‘칙례표’(전례력)과 회보에서 나온 사항들을 중심으로 명칭의 변화를 통해 고유전례력의 변천과정을 확인하려고 한다.

37) 방상근, 앞의 글, 78쪽.

38) Sacra Congregatio Rituum, ‘Dioecesium et vicariatuum apostolicorum in Missionibus’ (1927.12.14.), AAS 20(1928), 147~148.

39) 참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경향잡지』 19호(1925), 태학사, 283~285, 289, 313~315, 361~369, 385~386, 398~403쪽;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순교자시복경위”, 『경향잡지』 60호(1968/10), 태학사, 6~52쪽.

### 3.1. 1925년 시복되신 ‘조선치명복자 79위’와 1968년 시복되신 ‘24위’

1839년(기해)에서 1846년(병오) 사이의 순교자 79위는 파리의방전 교회의 노력으로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다. 이분들은 시복 다음해인 1926년 침례표에 없고 1927년 침례표에서 9월 26일 “△조선치명복자 七十九위”라고 나온다. ‘△’ 표시는 축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침례’, 곧 현재의 축일 정도의 급이다.<sup>40)</sup> 1947년 침례표에 갑자기 9월 16일 “△복자 안드레아김신부”라는 언급이 첨가되었다. 1952년 침례표에서 ‘복자 안드레아김신부’ 축일은 7월 5일로 날자가 변경되었고, ‘조선치명복자 七十九위’는 명칭이 ‘대한치명복자 七十九위’로 바뀌었다. 그리고 1953년에는 ‘대한치명복자 七十九위’가 ‘한국치명복자 七十九위’로, 1965년에는 ‘한국순교복자 七十九위’로 바뀌었다. 침례표 형태가 가로에서 세로 쓰기로 바뀌고 7월 5일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한국 성직자의 수호성인’이라고 하면서 ‘한국 성직자의 수호성인’이라는 호칭이 첨가되었으며, ‘한국 순교복자 79위’로 표기하면서 숫자를 한문이 아닌 아라비아숫자로 변경하였다.<sup>41)</sup>

1866년(병인) 대원군 박해시의 순교자 중 24위는 1968년 10월 6일 베드로 대성전에서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다.<sup>42)</sup> 그래서 1968년 천주교회 축일표에서 9월 26일 ‘한국 순교 복자 79위’라고 표기했던 것을 1969년 천주교회 축일표에서는 ‘한국 순교 복자 축일’로 수정되었다.

40) 1935년 침례표부터는 “조선치명복자 七十九위”라고 한글표기의 변화가 있다. 79위 시복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드리앵 로네, 『한국七十九위 순교복자전』, (안응렬 역), 가톨릭출판사, 41966, 7~14쪽.

41) 참조: 1947년, 1952년, 1953년, 1965년 침례표, 호남교회사연구소 제공.

42) 참조: 윤민규, “103위 순교자 시복·시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교회사 연구』 45집(2014/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42쪽.

### 3.2.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1984년은 한국천주교회에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지 200년이 되던 해로서, 이에 맞갖은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103위 복자의 시성식도 함께 준비하였다. 시성식을 준비하는 시작으로 한국 주교단은 축일의 제목 변경을 교황청에 청하였다.

한국 주교단은 “한국의 복자 라우렌시오 앙베르(Laurentius Imbert), 김 안드레아(Andrea Kim) 및 77위 동료 순교자들과 시메온 베르뇌(Simeon Berneux), 루카 위앵(Lucas Huin) 및 22위 동료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을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와 102위 동료 한국 순교자들”로 변경해 주실 것과 그 시성식을 교황 방한시 한국에서 거행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경을 청하는 이유로 첫째로 제목이 너무 길다는 것과 둘째로 103위 순교 복자들 중 93위가 한국인이고 10위만이 프랑스인이므로, 그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로 103위 순교 복자들 중에 김대건 안드레아가 한국 신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공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주교회의는 설명하였다.<sup>43)</sup>

이에 대해 교황청 국무성 장관 A. Casarli 추기경은 교황 성하께서 그와 같은 한국 주교단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제목 변경과 방한시에 시성식 거행을 하시기로 허락하셨음을 알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명의의 공문(Prot. No.115, 220)을 한국주교회의 의장 김수환 추기경 앞으로 보내왔다. 이 공문에서 교황께서는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와 그 동료 한국 순교자들의 시성식이 한국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 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각별히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심을 밝혔다.<sup>44)</sup>

43) 참조: 정은규, 「주교회의-한국에서의 시성식 거행을 청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0호(1983/8), 19쪽.

44) 참조: 정은규, 「교황 방한 및 한국에서의 시성식 거행」,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4호(1983/12), 17쪽.

그런데, 이 제목은 1983년 11월 7일에 시성성성에서 보낸 공문에서 약간의 변경이 생겨서 ‘정하상 바오로’가 추가되어, 한국 순교 성인 축일의 명칭은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sup>45)</sup>

한국 성인들의 축일은 103위 중에 7위가 함께 치명할 날인 9월 20일을 제1안으로, 한국 순교자 성월의 첫날인 9월 1일을 제2안으로 하여 교황청에 그 허락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sup>46)</sup> 그리고 교황청에서 한국교회가 요구한 대로 9월 20일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 축일로 결정하였다.<sup>47)</sup> 그리고 1984년 3월 20~23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순교 성인 축일은 한국에서 대축일로 지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의무 기념일(memoria obligatoria)로 지낸다고 결정하고 3월 26일 교황청 성사경신성성에 신청하였다.<sup>48)</sup> 그리고 4월 13일에 교황청으로부터 신청한 내용을 인준한다는 교황청의 답을 받았다.<sup>49)</sup>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집전으로 여의도 광장에서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미사’가 거행되어 성대하게 한국천주교회에 103위 성인이 탄생하게 되었다.<sup>50)</sup> 이어서 6월 1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수 주교는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들

45) 정은규, 「교황청-한국 순교 복자 시성 제목 확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6호(1984/2), 11쪽.

46) 정은규, 「주교회의-1983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5호(1984/1), 13쪽. 1846년 9월 20일에 치명하신 순교자들은 다음과 같다. 남경문 베드로, 한이형 라우렌시오, 우술임 수산나, 임치백 요셉, 김임이 데레사, 이간난 아가타, 정철엽 까타리나.

47) 정은규, 「기념사업위원회-한국 순교 성인 축일 9월 20일로 결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8호(1984/4), 10쪽.

48) 정은규, 「1984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9호(1984/5), 13쪽.

49) 참조: 정은규, 「교황청 - 한국 성인 축일 제정과 미사 경문 및 성무일도 독서 인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20호(1984/6), 24쪽.

50) 정은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주요일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20호(1984/6), 33쪽.

우리나라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정하여 7월 5일을 대축일로 지내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성된 후에도 우리나라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이므로 대축일을 그대로 지내야 하고, 다만 “복자”란 표현을 “성인”이란 표현으로 바꾸면 된다<sup>51)</sup>고 하였다.

103위 성인의 탄생으로 인해 9월 복자 성월은 “순교자 성월”로 바뀌고, 7월 5일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대축일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대축일”로 지내게 되었다.<sup>52)</sup> 이어서 1986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순교자 경축 행사를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한국 순교성인 대축일(9월 20일)의 경축 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6조)<sup>53)</sup>

### 3.3. 명절

한국천주교회 전래 200주년을 기념으로 “교회의 쇄신과 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세기의 선교를 위한 발돋움”<sup>54)</sup>을 목적으로 12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토의하고 그 결과로 “사목회의 의안”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평신도”에 관한 의안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한국천주교회의 토착화를 위한 사목적 방향 제시’<sup>55)</sup>를 하였고, 그 구체적인 제안은 “전례”에 관한 의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전례의 토착화를 꾀하고 전례의 올바른 쇄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례의 근본 목적과 기본 정신을 잘 살리면서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게 변경하려는

51) 같은 글, 10쪽.

52) 참조: 정은규, 「주교회의 - 한국 성인 공경에 관한 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22호(1984/8), 15쪽.

53)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41쪽

54) 박정일, 『사목회의 의안-1. 성직자』,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1984, 19쪽.

55) 참조: 박정일, 『사목회의 의안-3. 평신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1984, 73-96쪽.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56)</sup>

그 노력 중에 “명절과 경축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다.

“1) 명절이나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온 겨레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례적인 시도가 요망된다.

2) 특히 한국천주교회 창립 성현들과 순교 성현들은 비록 시복시성 이전부터라도 서서히 경축되도록 추진해야 한다.”<sup>57)</sup>

이러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의 전례의 토착화 노력은 주교회의의 1986년 춘계 정기총회 결정으로 이어져서 설과 한가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sup>58)</sup>

“설과 한가위가 주일에 겹치면 미사를 설과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이나 사순 시기 주일과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에는 전례력에 의한 미사 경문으로만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전날이나 또는 묘지에서 집전하는 미사는 설과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7쪽).<sup>59)</sup>

56) 참조: 같은 책, 21쪽.

57) 박정일, 『사목회의 의안-4. 전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1984, 28쪽.

58) 정진석,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156쪽. 1986년 한국 주교회의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주교회의는 한국 민족의 명절인 설과 한가위를 한국교회 고유의 대축일로 정하고 사도좌의 유희를 받아 고유한 미사 경문을 제정하였다.

나. 한국교회에서는 대축일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설과 한가위가 평일인 경우뿐 아니라 주일인 경우에도 미사를 설날과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

② 설이 재의 수요일이나 사순절 주일에 겹치면 전례력에 따른 미사 경문에서만 미사를 집전해야 한다.

③ 한가위가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9월 20일)에 겹치면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미사 경문으로 미사를 집전해야 한다.

④ 위의 경우에 그 전날 토요일에 미사를 집전하거나 또는 그 당일에 묘지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에는 설이나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

59)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41쪽.

설과 한가위가 주일에 겹칠 경우에 재의 수요일, 사순시기 주일,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에는 설과 한가위 고유 미사 경문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편전례력에 따른 전례문을 사용하여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설과 한가위 미사를 한국교회 고유의 대축일로 정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 3.4. 남북 분단의 한반도 상황에 맞는 기원 미사

한국교회에는 지역 상황에 따른 특이한 기원 미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드리는 미사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에 따라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으나 남과 북이 미군과 소련군의 분리 통치로 인하여 분단이 되었고 1950년 6월 25일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민족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한국교회는 1965년 2월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하였다.<sup>60)</sup> 이때 주교회의에서 언급된 ‘침묵의 교회’라는 표현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루어진 동구의 공산화와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치열해지고, 스탈린 시대 말기에 다시 소련에서 새로운 종교 탄압의 징후가 표출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같은 교회 박해가 도래함을 우려한 교황 비오 12세는 1953년에 성모 성년을 반포하면서 발표한 회칙 ‘영광의 빛나는 화관’ 속에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게 되어 전 세계 교회가 이에 동참하면서, 한국 주교회의도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sup>61)</sup> 이와 함께 교황 자신이 제정하였던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1957년에 한국교회에서도 권장되었는데, 1965년에 이르러 한국 주교회의가 나름대로 북한 교회를 위해 새로이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문

60)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북한선교위원회, 『한국천주교 통일사목 자료집』, 도서출판사람과사람, 1992, 45쪽.

61) 참조: 같은 책, 18쪽, 377~378쪽.

을 인준하여 기도운동을 선도하였다.<sup>62)</sup>

1992년 3월 춘계 주교회의에서 이 기도의 날의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었고, 2005년부터 이날을 6월 25일이나 그 전 주일에 지내다가, 2017년부터는 6월 25일에 거행하기로 하였다.<sup>63)</sup> 한국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인사인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0)가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천주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유전례력은 나름대로의 한국이라는 토양에 잘 자리 잡았다. 제2대 조선대목구장인 성 앙베르 주교에 의해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조선교회의 수호성인으로 모시면서 본격적인 고유전례력의 토대를 놓은 한국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을 시복, 시성하면서 103위 성인이 탄생하였다. 또한 고유한 전통 문화에서 형성된 설과 한가위 명절 미사를 정하여 드렸으며, 한반도의 아픈인 남북 상잔의 6.25사변을 오히려 민족의 상처일 수 있는 사건을 오히려 평화와 화합으로 가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여 기도하고 미사를 드린다. 한국천주교회는 주님의 구원 신비와 조화를 이루며 또한 한반도 상황과 문화적 토양을 고려한 고유전례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62) 참조: 같은 책, 19쪽.

63)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매일미사』(2018/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152쪽.

### 제3장 한국어본 『로마 미사 경본』(2017)에서의 고유전례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실행으로 전례서들이 개정을 하여 1970년 바오로 6세 『로마 미사 경본』 표준판이 나왔으며, 그로부터 5년 후인 1975년에 제2표준판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1983년 새 교회법에 수록된 전례 관련 사항과 그동안 개정된 전례 규정, 새로 시성된 성인들의 축일에 반영된 전례력과 기도문 등을 적용한 2002년 제3표준판이 나왔지만 오타와 교정 필요로 인하여 2008년 제3표준 수정판이 출간되었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로마 미사 경본』을 2017년 인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다.<sup>64)</sup>

그런데, 교황청의 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경신성사성에서 한국주교회의가 시안으로 작성한 한국어본 ‘로마 미사 경본’을 검토하고 2015년 6월 24일에 서한과 함께 전반적인 검토 의견 17항과 개별적인 검토 의견 76항을 첨부하여 보내왔다. 이 검토의견 항들 중에서 한국천주교회의의 고유전례력과 연관된 항들은 개별적인 검토 의견에서 모두 14개항이 있었다.<sup>65)</sup> 이러한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2015년 주교회의 추계정기회의에서 한국천주교회 고유전례력을 승인받고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추인을 신청하였다. 2017년 2월 21일에 한국어본 『로마 미사 경본』을 교황청에서 추인하여 같은 해 12월 3일(대림 제1주일)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경신성사성에서 의견을 제시한 순서에 따라서 주제를 다루고 주교회의의 조치들을 함께 살펴보려한다.

#### 1. 등급 조정된 고유전례력

경신성사성에서는 전례주년에 관한 일반 규범을 바탕으로 몇 가지 거행의 등급을 조정하여 변경할 필요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한국 사제들의 수호성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대축일(7월 5일), 아기

64) 참조: 윤종식, 앞의 책, 11~13쪽.

65) 참조: 경신성사성, 문서 번호 156/10/L.

예수의 성녀 테레사 대축일(10월 1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축일(12월 3일)의 거행 등급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 1.1. 성 김대건 안드레아 대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대축일의 경우,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고 있기에 훈령 ‘고유전례력’ 3항 “각 성인의 축제는 전례주년에서 한 번만 지내야 한다”는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신성사성은 한국천주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7월 5일에 성 안토니오 마리아 즈카르야 선택 기념일과 함께, 특히 한국에서 사제들의 모임과 연결하여 ‘신심 미사’로 거행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한국주교회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대축일을 신심 미사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신자들이나 사제들이 늘 7월 5일에 드리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신심미사로 등급하락하면서 선택사항이 되자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2019년 한국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10월 14~17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7월 5일) 신심미사를 ‘신심(기원) 1등급’으로 정해 성대히 기념하여, 연중시기 주일과 겹치더라도 전례적으로 이날을 기념하도록 했다.

### 1.2.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대축일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축일

1927년 비오 11세의 원의에 따라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발표된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를 기념하는 10월 1일을 선교지역인 한국에서는 대축일로 지냈다. 한국에서는 이미 12월 3일에 동방의 선교 수호성인으로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축일을 지내고 있었다. 이는 훈령 ‘고유전례력’ 11항 “어느 성당의 고유 전례 거행이 있다.

축성된 봉헌 기념일은 대축일, 명명일도 대축일, 그 성당에서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순교록 또는 그 부록에 기재된 성인 또는 복자의 기념을 지낼 수 있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1927년 12월 14일에 예부성이 발표한 선교지에서 두 성인에 대한 선교지에서의 특별한 전례 등급 부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개혁을 통해서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66)</sup> 그래서 전례개혁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고유전례력의 원칙을 따라야 하기에 경신성사성은 한국교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두 성인을 보편전례력에 있는 것과 동일한 칭호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선교의 수호성인’이라는 칭호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는 경신성사성의 권고에 따라 두 성인을 보편전례력에 있는 ‘기념’으로 정하였다.

## 2. 한국의 상황과 명절에 관련된 고유전례력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겪은 민족의 아픔인 6월 25일과 한국의 고유 명절 미사(설과 한가위)에 관한 검토 권고가 있다. 등급 조정과 기도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다.

### 2.1. 한국 통일을 위한 신심 미사

6월 25일 또는 6월 25일 전 주일을 한국 통일을 위한 신심 미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기도’에 속해야 하며, 전례 신비의 거행이 아니기에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기에 대축일 등급을 부여할 수 없고 주일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무시하고 이를 주일에 고정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숙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훈령 ‘고유전례력’ 2항 “1) 주일에는 그 본성에 따라 어떤 고유 전례 거행도 영구히 지정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대치가 되기 때문이다. 주교회의는 6월 25일에

66) 참조: 각주 31.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이름과 함께 ‘남북통일 기원 미사’라는 부제를 달았으며 예전에 사용하던 고유 기도문도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아 그 전 주일로 옮겨 지내는 곳에서는 한 대만 이 미사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정해진 기도문 말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원 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주었다.’<sup>67)</sup>

## 2.2. 한가위 미사

가족들이 모여서 지내는 큰 명절 중에 하나로서 음력 8월 15일의 한가위 전통 거행은 전례력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경신성사성은 뜻을 박고 있다. 그 이유로 한가위는 그레고리오 달력에 따르면 이동하는 날이고 전례 신비의 기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가위가 중요한 추수 감사 축제임을 고려하여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기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주교회의는 한가위 미사를 위한 고유 기도문을 승인받았으며 수확을 위한 기원 미사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68)</sup>

## 2.3. 설날 미사

경신성사성은 한국에서 설날이라고 하는 새해 명절이 음력 첫날(정월 초하루)에 지내는 하나의 이동 축제라는 사실을 먼저 밝힌다. 그리고 이는 1월 마지막에 주어질 수 없고 이러한 거행은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기도’의 일부를 이룰 것이기에 새해의 기도문을 사용하기를 권장하였다. 주교회의는 설 미사를 위한 고유 기도문을 승인받았으며 다른 ‘새해 기원 미사’ 기도문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sup>69)</sup>

67) 한국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로마 미사 경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1226쪽.

68) 같은 책, 1220쪽.

69) 같은 책, 1213쪽.

### 3. 수호성인과 새로운 복자 기념

한국교회는 중국의 북경교구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주문모 신부를 맞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전례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북경교구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 성인을 수호성인으로 모셨다가 제2대 조선 교구장 앙베르 주교가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수호성인으로 해달라는 청원에 따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께서 1841년 8월 22일자 교서를 통하여 ‘성 요셉’과 함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공동 수호자로 허락하셨다.

경신성사성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에게 붙여진 칭호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며, 오직 한 수호자만 모셔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한다.<sup>70)</sup>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오 7세 때부터 성 요셉을 한국 공동 수호자로 여겼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여 주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주교회의의 2015년 추계정기총회에서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한국교회 고유전례력과 고유 거행’을 승인하였다. 이때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한국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은 더 이상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자’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되었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여 서울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라는 명칭으로 시복 미사를 거행했다. 그리고 전례력에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로 명명되어 5월 29일에 선택기념일로 지낼 수 있게 되었

70) Cf. De Patronis constituendis, 5: Sacra Congregatio pro Cultu divino, *Normae circa patronos constituendos et imagines B. Mariae V. coronandos, Notitiae* 9(1973), 264.

다. 이는 한국천주교회가 1984년 5월 6일에 있었던 103위 시성식 직후부터 여기에서 누락된 신앙선조들에 대한 시복시성을 추진해 왔던 결과라 할 수 있다.<sup>71)</sup>

현재, 최양업 토마스 사제, 이벽 세례자 요한과 동료 순교자 132위,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순교자 80위가 시복을 추진 중이다.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 증거가 널리 알려져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 후손들에게 큰 모범과 신앙 증진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

## 결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에서 주님의 구원신비의 중심성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근원축일의 위치를 복구시켰다. 그리고 이 원칙을 중심으로 전례주년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면서도 전례주년의 두 주기인 구원의 신비들을 경축하는 주기와 성인들의 주기의 조화로움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또한 지역교회와 수도 가족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유한 관습을 존중하며 ‘고유전례력’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역사적으로 1784년에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평신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처음엔 북경교구 구베아 주교가 주문모 신부를 파견하여 1774년에 입국하면서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선교를 하게 되었으며,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칙서에 의해 조선에 대목구를 창설하고 초대 대목구장으로 브뤼기에르 주교를 임명하면서 합법적인 지역교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의 시작은 아무래도 제2대 교구장인

71) 참조: 차기진, “하느님의 종 124위 선정 과정과 시복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 『교회사 연구』 45집(2014/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57쪽.

앵베르 주교가 ‘성모무염시잉모태’를 조선대목구의 수호성인으로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1841년 8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교서를 통하여 그동안 북경교구 관할로서 모셨던 ‘성 요셉’과 더불어 ‘성모무염시잉모태’를 함께 수호성인으로 모실 것을 윤허하였다. 지금의 ‘전례력’이라 할 수 있는 ‘침례표’에 보편전례력과 고유전례력을 함께 표기하여 지켜왔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방지거 사베리오 동국대수호성인’과 1929년부터 추가된 ‘성녀 영호·이예수데레사 전교디방대주보’이다.

다음으로는 1925년 시복되신 ‘조선치명복자 79위’이며 이분들은 1928년 침례표에서 9월 26일에 적혀있었다. 1984년에는 103위 복자의 시성식이 여의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하여 집전함으로써 보편전례력에 들어가는 한국 성인들이 탄생했다.

토착화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회는 한국 고유의 명절들을 고유전례력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한국천주교회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1986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설과 한가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 분단의 한반도 상황에 맞는 기원 미사는 1965년부터 해마다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면서 그 바탕을 마련하였고 1992년에는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였다.

2017년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전례개혁 원칙에 따른 고유전례력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등급이 조정된 경축일들이 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7월 5일)은 대축일에서 신심 미사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10월 1일)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축일은 기념일로 조정되었다. 한국의 분단 상황에 맞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기원 미사는 6월 25일에 지내거나 또는 전 주일에 옮겨 지내는 곳에서는 한 대만 이 미사로 지낼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한가위와 설날과 같은 명절 미사는 기원 미사로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많은 한국 신자들은 한국 사제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경축일을 성대하게 거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는데, 2019년 한국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10월 14~17일)에서 신심미사를 신심 1등급으로 정하여 성대히 기념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5월 29일)을 선택 기념일로 현양하도록 하였다.

고유전례력이 많아지면 지역 교회가 활성화되어간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보편전례력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신비의 중심성과 근원축일인 주일신학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한국교회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신비로 태어난 교회공동체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1. 교회 문헌

Sacra Congregatio Rituum, ‘*Dioecesium et vicariatuum apostolicorum in Missionibus*’ (1927.12.14.), *AAS* 20(1928), 147~148.

\_\_\_\_\_, *Instructio Calendario particularia de calendariis particularibus atque Officiorum et Missarum propriis recognoscendis*(1970.6.24.), *AAS* 62(1970), 651~663; *Notitiae* 6(1970), Città del Vaticano, 349~370.

\_\_\_\_\_, *Normae circa patronos constituendos et imagines B. Mariae V. coronandos*, *Notitiae* 9(1973), Città del Vaticano, 263~267.

Congregazione per il Culto divino e la Disciplina dei Sacramenti, *Notificazione II Concilio Vaticano II* su alcuni aspetti dei calendari e dei testi liturgici propri(1997.9.20.): *Notitiae* 33(1997), Città del Vaticano, 284~29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로마 미사 경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_\_\_\_\_,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2. 단행본

A. Bergamini, “Anno liturgico” in(a cura di) D. Sartore, A. M. Triacca, C. Cibien, *Liturgia*, San Paolo, 2001, pp.75~95.

A. Choi, *L'Erection du premier Vicariat Apostolique et les origines du Catholicisme en Corée*, Suisse, 1961.

\_\_\_\_\_, 『사목회의 의안 3, 평신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위원회, 1984.

\_\_\_\_\_, 『사목회의 의안 4, 전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위원회, 1984.

박정일, 『사목회의 의안 1, 성직자』,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위원회, 1984.

샤를르 달레, 안응렬, 최석우 역, 『韓國天主教會史』中,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아드리앵 로네, 「한국七十九위순교복자전」, (안응렬 역), 가톨릭출판사, 1966.
- 윤종식, 『꼭 알아야 할 새 미사통상문 안내서』, 가톨릭출판사, 2017.
- 이만채 편, 김시준 역주, 『천주교 전교 박해사(백위편)』, 국제고전교육협회, 1984.
- 이영춘, 「중국에서의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문제 및 조선대목구 설정에 관한 연구」,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159-208쪽.
- 이정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마리아 신학 연구』,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3.
- 정진석,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한국천주교통일사목자료집』 1, 도서출판사람과사람, 1992.

### 3. 잡지류

- 방상근, 「‘침례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敎會史研究』 42(2013), 한국교회사연구소, 55-92쪽.
- 윤민규, 「103위 순교자 시복·시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교회사연구』 45집(2014/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7-51쪽.
- 이창익, 「시현력 역주에 나타난 시간 선택의 의미」, 『종교문화비평』 창간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266-271쪽.
- \_\_\_\_\_, 「조선후기 역서의 구조와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238-239쪽.
- 정은규, 「주교회의 — 한국에서의 시성식 거행을 청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0호(1983/8), 19-21쪽.
- \_\_\_\_\_, 「교황 방한 및 한국에서의 시성식 거행」,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4호(1983/12), 17-18쪽.
- \_\_\_\_\_, 「교황청 — 한국 순교 복자 시성 제목 확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6호(1984/2), 11쪽.
- \_\_\_\_\_, 「주교회의 — 1983년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5호(1984/1), 12-17쪽.
- \_\_\_\_\_, 「기념사업위원회 — 한국 순교 성인 축일 9월 20일로 결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8호(1984/4), 10쪽.
- \_\_\_\_\_, 「교황청 — 한국 성인 축일 제정과 미사 경문 및 성무일도 독서 인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20호(1984/6), 24-31쪽.

- \_\_\_\_\_,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주요일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20호(1984/6), 31~34쪽
- \_\_\_\_\_, 「주교회의 — 한국 성인 공경에 관한 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22호(1984/8), 15쪽.
- 조현범, 「한말 태양력과 요일주기의 도입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7 (1999/봄), 한국종교연구소, 235~254쪽.
- 차기진, “하느님의 종 124위 선정 과정과 시복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 『교회사 연구』 45집(2014/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53~87쪽.
- 최석우, 「사학징의를 통해서 본 초기천주교회」, 『교회사연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3~47쪽.
- \_\_\_\_\_, 「한국교회와 로마 교황청」, 『교회와 역사』 106(1984), 한국교회사연구소, 4~11쪽.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순교자시복경위”, 『경향잡지』 60호(1968/10), 태학사, 6~52쪽.

#### 4. 기타

호남교회사연구소, 첨례표 자료 제공(1916~1970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는 중세를 거치면서 성모님과 성인들의 축일에 가려져서 그 중요성이 약화되어있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근본 축일인 ‘주일’과 ‘파스카 성삼일’을 중심으로 전례주년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일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수난과 함께 이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 이렇게 속량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를 신자들에게 열어, 신자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한다”(『전례현장』 102항).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사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가톨릭교회교리서』 1067항)하고 그것을 인간의 시간에 배치하여 모든 시기에 현존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전례주년’이라고 한다.

교회는 전례주년의 전례 여행을 ‘전례력’에 정해 놓았다. 전례력에는 로마 전례를 따르는 전체 교회가 사용하는 ‘보편전례력’과 어떤 지역 교회나 수도 공동체가 사용하는 ‘고유전례력’이 있다. 보편전례력에는 “전례 여행 전체 주기가 들어 있다. 곧 고유 시기에 지내는 구원 신비의 전례 여행,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모든 이가 의무적으로 지내야 하는 성인들의 전례 여행과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성덕을 보여 주는 다른 성인들의 전례 여행이 들어 있다. 그러나 ‘고유전례력’에는 지역 교회에서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전례 여행들로서 보편 주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되어 있다. 각 개별 교회와 수도 가족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인들을 특별히 공경해야하기 때문이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49항). 지역교회와 수도회의 고유한 전례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관할 권위(지역 주교, 지역 주교회의, 수도원 원장 등)가 작성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서 고유전례력에 배치해야 한다.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 역사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한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었다. 1784년에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평신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처음엔 북경교구 구베아 주교가 파견한 주문모 신부를 1774년 12월에 맞아들이면서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선교를 하게 되었다.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칙서에 의해 조선에 대목구를 창설하고 초대 대목구장으로 브뤼기에르 주교를 임명하면서 합법적인 지역교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실질적인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의 시작은 제2대 교구장인 앙베르 주교가 ‘성모무염시잉모태’를 조선대목구의 수호성인으로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1841년 8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교서를 통하여 그동안 북경교구 관할로서 모셨던 ‘성 요셉’과 더불어 ‘성모무염시잉모태’를 함께 수호성인으로 모실 것을 운허하였다. 지금의 ‘전례력’이라 할 수 있는 ‘침례표’에 보편전례력과 고유전례력을 함께 표기하여 지켜왔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방지거 사베리오 동국대수호성인’과 1929년부터 추가된 ‘성녀 영히·이예수데레사 전교디방대주보’이다.

다음으로는 ‘순교자’에 대한 고유 축일에 관한 거행이 있다. 1925년 시복되신 ‘조선치명복자 79위’이며 1928년 침례표에서 9월 26일에 적혀있었다. 이 분들은 1968년에 시복되신 24위에 함께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방한하여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로 시성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보편전례력에 들어가는 한국 성인들이 탄생했다.

토착화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회는 명절들을 고유전례력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한국천주교회 전래 200주년(1984년)을 기념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1986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설과 한가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 분단의 한반도 상황에 맞는 기원 미사는 1965년부터 해마다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면서 그 바탕을 마련하였고 1992년에는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였다.

2017년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개혁 원칙에 따른 고유전례력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등급이 조정된 경축일들이 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7월 5일)은 대축일에서 신심 미사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10월 1일)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축일은 기념일로 조정되었다. 한국의 분단 상황에 맞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기원 미사는 6월 25일에 지내거나 또는 전 주일에 옮겨 지내는 곳에서는 한 대만 이 미사로 지낼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한가위와 설날과 같은 명절 미사는 기원 미사로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 주제어: 한국천주교회, 고유전례력, 로마 미사 경본, 전례력, 전례개혁.